

##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6. 1. 27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6. 1. 27
- 라. 상정일자 : 제44회부천시의회(임시회)제3차총무위원회(96. 2. 2)
- 마. 의결일자 : 제46회부천시의회(임시회)제3차 총무위원회(96. 6. 19)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 김동언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오랜기간 여러 분야에 걸쳐 매년 시상해 옴으로써 수상자가 소수의 추천자 중에서 결정되는 등 상의 권위와 수상자 자격에 문제점이 있어서 횡수 및 시기조정
- 체육부문의 추천권자 확대 및 현행조례상 불부합한 관련조문의 정리

#### 나. 주요골자

- 문화상 시상시기 조정(안 제3조)
  - 현행 :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
  - 개정 : 격년제로 시민의 날(10월 1일)
- 체육부문의 추천권자 확대(안 제4조제5호)
  - 관내 대학총·학장, 전문대학장, 고등학교장도 가능
- 불부합한 관련조문 정리
  - 산업부문→산업기술부문(안 제2조제6호)
  - 환경복지부문→지역사회발전(봉사)부문(안 제4조제4호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상대상자 추천권자의 추천에 동장을 넣는 것은 어떤가?</li> <li>○ 반드시 시민의 날로 하는 이유는?</li> <li>○ 격년제로 하는 이유는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천범위를 넓힐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.</li> <li>○ 많은 시민이 참석하므로 상의 권위와 명예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</li> <li>○ 매년하는 경우 상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며, 수상대상자의 추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</li> </ul>

4. 토론요지

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문화상 시상을 매년 하자는 소수의견 있었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수원, 성남, 안양, 진주시의 문화상조례와 충분한 비교검토를 하였음

8. 체계적인 심사내용

○ 없음

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76호
의 결	96. 6. 28
년 월 일	(제46회)

제출년월일 : 1996. 6. 25

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1. 수정이유

수상대상자의 추천에 있어서 지역 내의 사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동장을 각 분야의 추천권자로 추가, 수정함으로써, 다수의 수상대상자를 추천받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발하여 상의 권위와 명예를 높이는데 있음.

2. 주요골자

○ 안 제4조(수상대상자의 추천)중 “수상대상자는 다음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”를 “수상대상자의 추천은 관할동장이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”로 함.

###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수상대상자의 추천은 관할동장이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”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수상부문과 인원) (생략) 1~5(생략) 6. <u>산업부문</u>: 1명</p> <p>제3조(시상시기) 문화상은 년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부천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<u>따로 정한다.</u></p> <p>제4조(수상대상자의 추천) 수상대상자는 다음 추천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.</p> <p>1. 학술부문: 부천시교육장, 관내대학총·학장, 전문대학장, 고등학교장, 기타학술연구기관대표</p> <p>2. 문화예술부문: 부천시교육장, 관내대학총·학장, 전문대학장, 고등학교장, 부천문화원장, 한국예총부천시지부장, 기타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단체대표</p> <p>3. 교육부문: 부천시교육장, 관내대학총·학장, 전문대학장, 고등학교장, 기타 사회교육단체대표</p> <p>4. <u>환경복지부문</u>: 구청장, 사회봉사단체 및 직능단체, 자생단체, 환경관련단체, 보건의체, 사회복지단체, 여성단체대표</p>	<p>제2조(수상부문과 인원) (현행과 같음) 1~5(현행과 같음) 6. <u>산업기술부문</u>: .....</p> <p>제3조(시상시기) 문화상은 격년제로 시상하되 <u>그 시기는 시민의 날인 10월 1일로 한다.</u></p> <p>제4조(수상대상자의 추천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학술부문: (현행과 같음) .....</p> <p>2. 문화예술부문: (현행과 같음) .....</p> <p>3. 교육부문(현행과 같음) .....</p> <p>4. <u>지역사회발전(봉사)부문</u>: .....</p>	<p>제2조(수상부문과 인원) (개정안과 같음) 1~5(개정안과 같음) 6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3조(시상시기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4조(수상대상자의 추천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학술부문: (개정안과 같음) .....<u>동장</u></p> <p>2. 문화예술부문: .....</p> <p>.....<u>동장</u></p> <p>3. 교육부문: .....</p> <p>.....<u>동장</u></p> <p>4. <u>지역사회발전(봉사)부문</u>: .....</p> <p>.....<u>동장</u></p>

수정안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5. 체육부문 : <u>부천시교육장, 부천시체육가맹 단체회장, 생활체육단체대표</u></p>	<p>5. 체육부문 : <u>부천시교육장, 관내대학총·학 장, 전문대학장, 고등학교장, 부천시체육가맹 단체회장, 생활체육단체대표</u></p>	<p>5. 체육부문 : <u>부천시교육장, 관내대학총·학 장, 전문대학장, 고등학교장, 부천시체육가맹 단체회장, 생활체육단체대표, 동장</u></p>
<p>6. 산업기술부문 : 구청장, 부천시지방노동사 무소장, 농협중앙회부천시지부장, 부천상공회 의사회장,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부천시지부장, 종업원 100인이상 중사업체의장, 노동조합 의 대표</p>	<p>6. 산업기술부분 :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	<p>6. 산업기술부분 :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<u>동장</u></p>

[수정안포함]

부천시 조례 제 호

###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문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중 “산업부문”을 “산업기술부문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시상시기) 문화상은 격년제로 시상하되 그 시기는 시민의 날인 10월 1일로 한다.

제4조각호에 동장을 삽입하고, 동조4호중 “환경복지부문”을 “지역사회발전(봉사)부문”으로 하며, 동조제5호중 “부천시교육장”다음에 “관내 대학총·학장, 전문대학장, 고등학교장”을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